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관세학석사 학위논문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Treatments for Freight Management in  
Free Port District

- Focusing on Busan Free Port District



지도교수 정 홍 열

2018년 6월 22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 제 관 세 학 과

양 기 근

본 논문을 양기근의 국제관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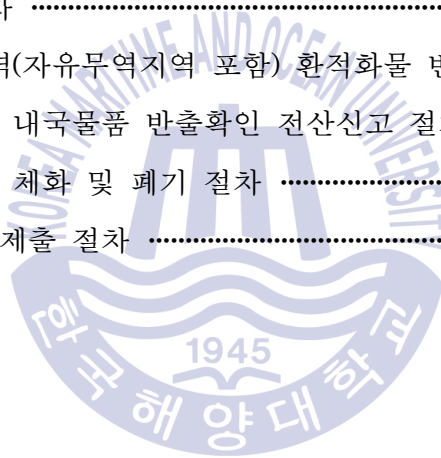
목 차 .....	i
표 목 차 .....	ii
그 립 목 차 .....	iii
ABSTRACT .....	iv
<b>제 1 장 서론</b>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선행연구 분석 .....	2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b>제 2 장 비관세지역 화물관리제도</b>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	7
제 2 절 보세구역 .....	16
<b>제 3 장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태분석</b>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현황 .....	25
제 2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무절차 .....	29
<b>제 4 장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안</b>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의 문제점 .....	37
제 2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안 .....	39
<b>제 5 장 결론</b> .....	44
<b>【 참고문헌 】</b> .....	46

## 〈 표 목 차 〉

〈표 1-1〉 선행연구 요약정리 .....	4
〈표 2-1〉 자유무역지역제도 변천 .....	8
〈표 2-2〉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	8
〈표 2-3〉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적용지역 .....	13
〈표 2-4〉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장치기간·매각·폐기절차 비교 .....	14
〈표 2-5〉 재고관리 대장 기록사항 .....	15
〈표 2-6〉 보세구역의 종류 .....	17
〈표 2-7〉 보세구역 종류별 내국물품 신고절차 .....	18
〈표 2-8〉 보세구역 종류별 장치기간 .....	20
〈표 2-9〉 자유무역지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주요 차이점 .....	23
〈표 3-1〉 우리나라 항만별 수출입 교역량 및 교역액 .....	25
〈표 3-2〉 전국 비관세지역 수출실적(2017년) .....	26
〈표 3-3〉 전국 비관세지역 수입실적(2017년) .....	27
〈표 3-4〉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화물 물동량 .....	28
〈표 3-5〉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컨테이너 물동량 .....	28
〈표 3-6〉 보세창고와 자유무역지역의 내국물품 반출절차 비교 .....	33
〈표 4-1〉 세관장 입주계약 체결사업 이행 조사 권한 부여 개정안 .....	40
〈표 4-2〉 환적화물 입항 반입신고 개정안 .....	40
〈표 4-3〉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신고 개정안 .....	41
〈표 4-4〉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확인 폐지 개정안 .....	42
〈표 4-5〉 자유무역지역법 보수작업 기록관리 위반 처벌 규정 개정안 .....	42
〈표 4-6〉 환적화물 국외반출신고 개정안 .....	43

## 〈 그림 목 차 〉

〈그림 2-1〉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통제시설 조감도 .....	10
〈그림 2-2〉 해상화물 반입절차 .....	11
〈그림 2-3〉 자유무역지역 재고조사 절차 .....	16
〈그림 3-1〉 입주계약업체 업체부호 부여 절차 .....	29
〈그림 3-2〉 입항적하목록 제출 절차 .....	30
〈그림 3-3〉 자유무역지역 수입화물 통관단계 흐름도 .....	30
〈그림 3-4〉 하선신고 절차 .....	31
〈그림 3-5〉 특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절차 ...	32
〈그림 3-6〉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확인 전산신고 절차 .....	34
〈그림 3-7〉 자유무역지역 체화 및 폐기 절차 .....	35
〈그림 3-8〉 출항적하목록제출 절차 .....	36



## < 국문초록 >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양 기 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이 논문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 간의 화물관리 체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부산항과 같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물류거점으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제도를 비교·검토하고 화물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즉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외국물품 반출입 절차, 내국물품 반출입 절차, 보세운송 등 화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무를 살펴보았다. 이런 실무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제도와 보세구역 간의 화물관리 체계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도출되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세관장이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정기재고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이것은 입주계약 체결사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환적화물 반출입 신고절차를 적하목록제출에서 전자문서 신고로 대체한다. 셋째, 수출신고 수리된 외국물품을 반입신고할 때 수출신고필증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내국물품 반출시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 넷째, 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을 위반할 때 처벌은 관세법과 동일하게 하도록 완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

## ABSTRACT

# A Study on Improvement Treatments for Freight Management in Free Port District - Focusing on Busan Free Port District

Yang, Gi Geu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actual condition of freight management by reviewing and examining freight management system of free port district and bonded zone. It focuses on Busan port, the signature free port district in Korea, in order to support domestic free port district for the port authority to smoothly operate its function as logistic hub. And this theses also suggested the improvement treatments for problems that occur due to different freight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areas.

First of all, the current situations and systems on freight management between two areas were compared and examined. The general contents and practises such as transfer procedure of foreign and domestic products and bonded transportation were reviewed. Based on these analyses on the practises and previous researches, many problems which take place because of system differences between two areas mentioned above.

The improvement treatment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head of customs authority has a duty to report regular inventory results to manager of free port district. This measure aims to efficiently manage



the another companies distinguished from those with the moving-in-contract in the free port district. Secondly, when it comes to a manifest list submission on the transfer declaration procedure for the transshipment cargo, the existing document declaration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lectric document declaration. Thirdly,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exempt from submission of export declaration document for in-house foreign goods with export declaration and to omit documentary evidence when the domestic goods is taken out.

Finally, this thesis suggested that the law should be prepared to reduce penalty levied on violation of maintenance in free port district that may deal with it to the same level of customs law.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공항만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된다. 1970년에 공포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이 최초 지정된 이래 2004년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고 있다.

1970년부터 운영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가공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오랜 세월 제도가 정착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최근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이것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

부산 신항, 광양항 등 국내 주요 컨테이너전용터미널 항만과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보세화물 반출입 건수 80% 이상이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은 2006년 부산신항만을 시작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을 첫 개장하여 2017년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66%를 처리하고 있다. 배후단지도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글로벌 복합물류업체가 입주하는 등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제도 운영 등 과감한 규제완화 우선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예컨대 법규수행능력평가<sup>1)</sup> 우수업체에 대한 재고조사를 생략하는 등 화물관리분야에도 자율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법이 적용되는 보세구역 간 보세화물 관리절차가 서로 달라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제도를 비교·검토한다.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간의 화물관리 체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 상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주요 경쟁 항만들과 극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거점으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제 2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선행연구 분석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거나 세관공무원 등 유관기관 근무자, 입주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오(2006)<sup>2)</sup>는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및 과세표준 공제방법 개선, 입주기업체의 물품관리 자율성 제고, 내국물품의 반출절차 개선, 국외반출물품의 선적 및 보세운송 기간연장 승인 일수 완화, 역외작업의 시설재 반출기간 제한 규정 폐지, 역외작업 범위제한 규정 완화, 역외작업 신고 시 수출실적증빙서류 제출 규정 보완 등 물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개(2007)<sup>3)</sup>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권자이고 인센티브의 제공 주체로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도 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고화물관리 및 수입

1)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할 점수와 물류공급망으로 연관된 전체 수출입물류업체의 측정점수를 반영하여 산출

2) 이성오, 「마산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 90-96

3) 장개,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72-77

통계 계상목적을 위하여 사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사용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내역을 신고토록 개선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전산시스템을 수정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sup>4)</sup>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률에서 관세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 자유무역지역법에 차별규정과 감경규정이 없어 입주기업체의 차별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따라서 기존 별칙 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관세법과 동일한 차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통관 및 화물관리와 관련된 규정도 관세법으로 일원화 하는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함길선(2015)<sup>5)</sup>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인센티브 개선방안으로 사전적 세제지원 정책의 도입, 협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 내·외국인 투자의 조세감면 형평성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수입 화물 등 장치기간 제한의 폐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동등한 세제혜택, 자유무역지역내 생산물품의 수입시 FTA 협정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을 제시하고 있다.

강성훈외 2인(2017)<sup>6)</sup>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자체 등의 관리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지역선정 및 해제나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의 수출기여와 고용창출 등이 포함되는 통일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상렬(2018)<sup>7)</sup>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등록관리 통제 강화 및 농축수산물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2015, pp. 103-106

5) 함길선,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 106-109

6) 강성훈외 2인,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p. 86-89

7) 윤상렬, 「자유무역지역내 효율적 화물관리 및 신물류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 68-77

가공업체 입주제한 필요성, 자유무역지역내 보수작업 신고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자율적인 화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세사 채용 의무화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1-1> 선행연구 요약정리

연구자	연구목적	주요연구결과
이성오 (2006)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물품관리제도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및 과세표준 공제방법 개선, 입주기업체의 물품관리 자율성 제고, 내국물품의 반출절차 개선, 국외반출물품의 선적 및 보세운송 기간연장 승인 일수 완화 등 제시
장개 (200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관리물품의 반출입 절차 및 세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제도를 제도적, 정책적, 운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시·도지사에게도 관리권을 부여, 사용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내역을 신고토록 개선,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 개선방안 제시
함길선 (2015)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고찰하여 그 필요성을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종합보세구역 등 국내 유사제도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 도출	수입화물 등 장치기간 제한의 폐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동등한 세제혜택, 자유무역지역내 생산물품의 수입시 FTA 협정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는 통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	자유무역지역 법률에서 관세법 적용 배제를 적용한다고 수정, 장기적으로 통관 및 화물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시
강성훈 외2인	우리나라와 주변 경쟁국의 자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되는 화물에 대

(2017)	무역지역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해서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감독 절차를 통하여 통제할 수 없으므로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는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제시
윤상렬 (2018)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진단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도출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화물관리와 물류처리절차를 개선	외국물품 등을 취급하는 입주기업의 등록관리, 자유무역지역내 농축수산물 가공업체 입주제한, 입주계약 해지 사유 개선, 보수작업 신고절차 마련, 보세사에 의한 반출입물품 자율관리 등 개선방안 제시

###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먼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에 대한 제도와 자유무역지역 실무절차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서 자유무역지역을 화물관리 제도를 파악하고, 화물관리 운영현황을 검토한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항만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된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에 관련된 법규내용과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 및 연구 논문, 연구단체의 학술지, 무역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신문기사 포함),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의 범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2장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제도와 관련 법 규정 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제 3장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무역 현황 및 수출입 실적, 물동량 등에 대해 분석하고,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태를 실무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 4장은 이론적·실무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행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은 결론에서는 각 장별 요약과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 제 2 장 비관세지역 화물관리 제도

###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 1. 자유무역지역 제도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ree Trade Zone)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경제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마산과 익산(이리)에 제조·가공 산업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고용 및 수출증대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2년도에는 수출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공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입주하는 국제물류업체와 수출업체 등이 자유로운 물류업을 할 수 있는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부터 관세자유지역은 자체의 물류업 기능이 제조, 가공 및 무역기능까지 확대한 자유무역지역 제도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 제도에서 출발하여 관세자유지역제도를 거쳐 현재 자유무역지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표 2-2>는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입주업체 수로 보면 산업단지형에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09개 업체로, 공항만 물류단지형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308개 업체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자유무역지역제도 변천

구 분	주요기능	지정지역	운영시기
수출자유지역	제조, 가공	마산, 이리(익산)	1970.1~2004.6
관세자유지역	물류	부산항, 광양항	2002.1~2004.6
자유무역지역	제조,가공,물류,무역	산업단지(7),항만(5),공항(1)	2004.6~현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표 2-2>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2017년)

구 분	명 칭	위 치	입주업체
산업단지형 (7)	마산자유무역지역	경남 창원	109
	군산자유무역지역	전북 군산	29
	대불자유무역지역	전남 영암	29
	동해자유무역지역	강원 동해	17
	울촌자유무역지역	전남 순천	13
	울산자유무역지역	울산 울주	34
	김제자유무역지역	전북 김제	16
공항만 물류단지 (6)	부산항		68
	인천항		1
	평택·당진항		15
	광양항		41
	인천국제공항		308
	포항항		3
합 계			68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 2. 자유무역지역 법적용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내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지 않으면 관세법의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단순가공이나 보수 등을 한 물품뿐만 아니라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절차를 거친 후 반출입신고 없이 자유무역지역을 단순히 경유하는 물품도 적용대상 물품이 된다.

자유무역지역법의 적용시점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시점부터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이나 사용·소비, 물류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한 후 국내 또는 외국으로 반출되는 시점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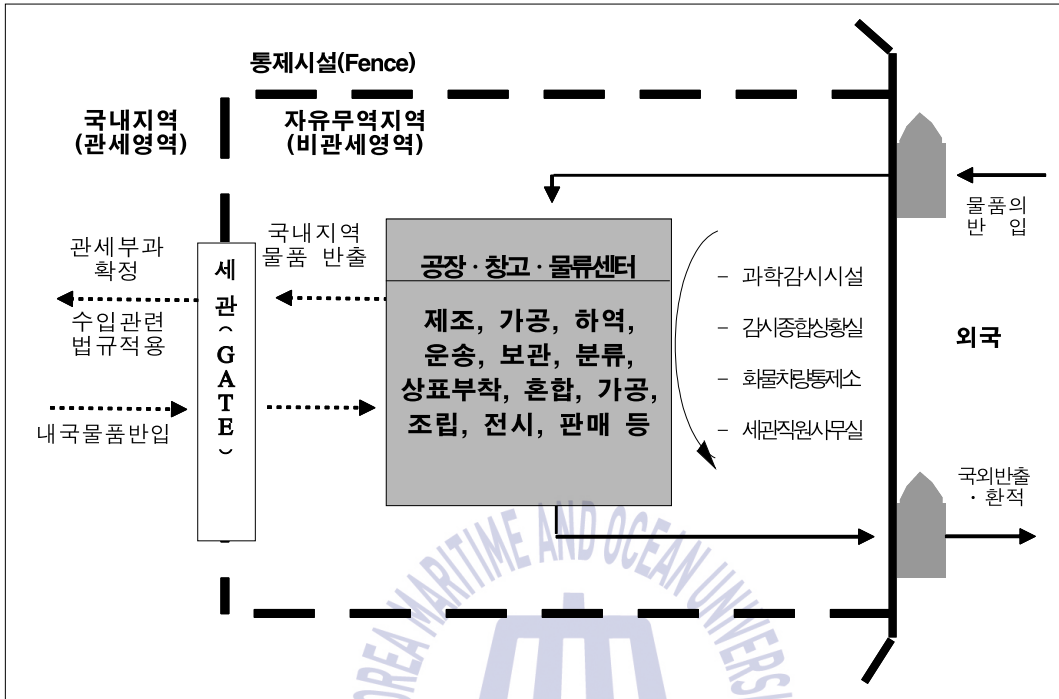
## 3. 통제시설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내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고 통제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통제시설로는 외곽울타리 및 외국물품의 불법유출·도난방지를 위한 과학감시장비, 감시종합상황실과 화물차량통제소, 세관공무원이 24시간 상주근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규모, 반출입물량, 지리적 특성 등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관의 감시단속 및 물품검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기준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1>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통제시설 조감도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4. 반출입 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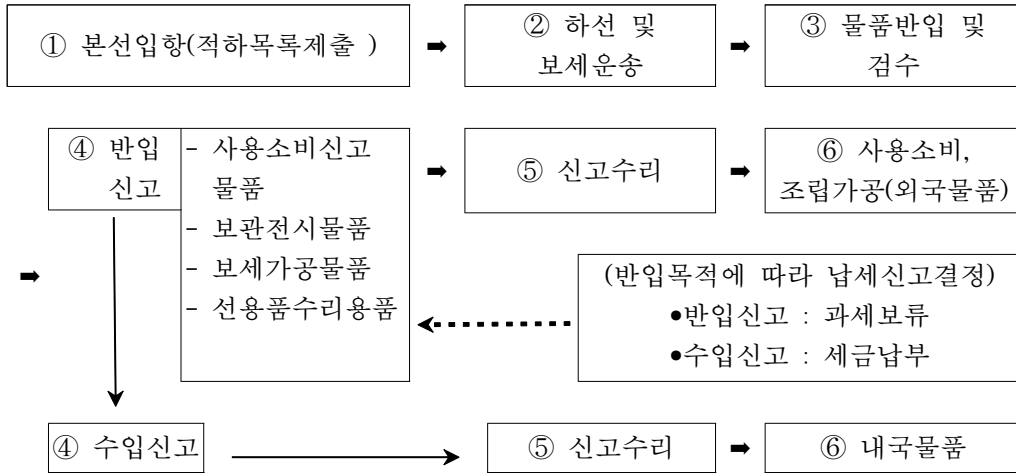
##### 1) 외국물품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절차는 그림 <2-2>에서와 같이 외국물품을 보관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물품은 수출입화물관시스템<sup>8)</sup> 전자문서로 반입 신고한다. 반면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시스템에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반입신고한다.

국외로 반출할 때는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선박 등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이적하는 화물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한 경우 반출신고를 생략한다.

8) 적하목록, 적재하선,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 시스템을 말한다.

〈그림 2-2〉 해상화물 반입절차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2) 내국물품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환급대상물품 반입 확인신청하여야 한다<sup>9)</sup>.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은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수입신고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외국물품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절차는 관세영역에서 수입통관절차와 동일하다. 자유무역지역 안의 제조가공업체에서 외국물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사용·소비신고 후 제조, 가공, 조립, 보수 작업 물품을 관세자유지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다.

9)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6. 보세운송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내 장소로 보세운송 하는 경우 관세법상 보세운송절차를 준용한다.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의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한다.

## 7. 특례제도

### 1) 역외작업신고<sup>10)</sup>

역외작업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과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작업완료보고를 하고 작업기간 만료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 포함)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다시 반입하여야한다

### 2) 외국물품 등 일시반출<sup>11)</sup>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반출목적을 수행한 후 재반입 하며, 반출입신고는 일시반출허가서나 재반입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이행하지는 아니한다.

## 8. 매각 및 폐기

### 1) 장치기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산항,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

10) 자유무역지역 내의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관세자유지역에서 가공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을 수리, 전시와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일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장이 정한 지역은 물류신속을 위하여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2-3>은 자유무역지역 내 장치기간 적용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항이 가장 많은 7개 지역, 인천항은 2개 지역, 인천공항은 1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표 2-3>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적용지역

구분	적용지역
부 산 항	대한통운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 천 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 2) 체화물품 매각

체화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수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로 정의된다. 부산항,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신속화를 위해 지역 반입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나 화주불명인 물품 등에 대해 그 외 지역의 입주기업이 세관장에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을 준용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 3) 물품의 폐기

자유무역지역의 반입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부패·변질된 물품 등 폐기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 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 등에게 통보 한다.

<표 2-4>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장치기간·매각·폐기절차를 비교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외에는 장치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세구역과 달리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표 2-4〉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 매각 · 폐기절차 비교

구분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법	
장치기간	법 제177조, 고시 제4조		FTZ법 제37조, 고시 제19조	
	부산항 지정장치장 기타	2 개월 6 개월	관세청장 지정지역 기타	3 개월 없음
매각	법 제208조 ~ 제212조		FTZ법 제37조	
	절차 매각 대상	반출통보 → 공매 → 국고귀속 -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 ※ 환적화물 매각 가능	지정지역 기타	관세법 제화공매 준용 [6개월 경과후 매각요청] - 화주 불명, 화주 부도·파산 - 화주주소 불명 화주추거절
신고	법 제160조 제1항, 고시 제25조		FTZ법 제38조 제3항	
	대상 신고 비용	-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실효 경과, 상품가치 상실 - 상품가치는 있으나 실용성이 없는 경우 - 매각되지 않고 국고귀속 실익이 없는 경우 - 폐기하려는 자 - 화주, 반입자, 위임받은 자	대상 신고 비용	- 폐기하려는 물품 - 입주기업체 - 명문규정 없음
폐기명령	법 제160조 제4~6항, 고시 제40~41조		FTZ법 제40조, 고시 제25~27조	
	폐기대상 명령통보 주소불명 긴급상황 비용부담 불이행	- 생명·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 물품 - 부패·변질 물품 - 유효기간 경과 물품 -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 화주*, 반입자**, 위임받은 자 * 적하목록 수하인 ** 적하목록작성책임자 게시공고 세관장이 폐기 후 통보 화주, 반입자, 위임받은자 행정대집행	폐기대상 명령통보 주소불명 긴급상황 비용부담 불이행	- 관세법 폐기명령대상 - 지재권 침해물품 - 반입 후 1년경과 품명 미상물품 - 검역기관 폐기결정물품 화주, 반입자, 위임받은자 관보, 세관계시관, 인터넷 세관장이 폐기 후 통보 화주, 반입자, 위임받은자 행정대집행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9. 보수작업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과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은 작업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세관신고는 생략한다.

## 10. 재고관리

재고관리대상 물품은 <표 2-5>에 정리된 것처럼 반입내역, 반출내역,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 또는 소비내용, 제품 및 잉여물품 내역, 역외작업물품 내역, 부가가치 물류활동 작업내역, 폐기 및 잔존물 내역, 보수작업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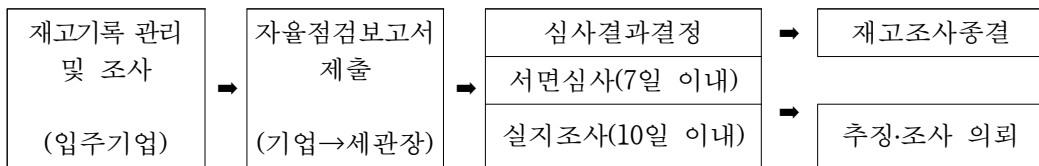
<표 2-5> 재고관리 대장 기록사항

1. 반입내역 : 내·외국물품의 구분, 반입일자, 반입근거(반입신고번호·화물관리번호·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신청번호·공급자 등)
2. 반출내역 : 내·외국물품의 구분, 반출일자, 반출근거(수출신고번호·수입신고번호·보세운송신고번호·반출신고번호·화물관리번호 등),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단가, 가격 등
3.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 또는 소비 내역 :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반입일자, 사용 또는 소비일자, 재고 수량 또는 중량 등
4. 제품 및 잉여물품 내역 : 생산(발생)일자,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5. 역외작업물품 내역 : 신고번호, 신고일자, 반출입일자 및 반출입 내역(직반출입 내역 포함),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역외작업장소, 역외작업완료일자 등
6. 부가가치 물류활동 작업내역 : 반입물품의 보관 외에 보수작업 등의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별 관련 작업내역 및 작업일자 등
7. 폐기 및 잔존물 내역
8. 보수작업내역



재고조사는 <그림 2-3>에서 보듯이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세관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점검표<sup>12)</sup>를 심사하여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주기업은 자율점검표 제출로 재고조사를 대신한다. 그 외 입주기업은 재고조사 방법을 정하여 조사하여 종결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추징 또는 재조사를 의뢰한다.

<그림 2-3> 자유무역지역 재고조사 절차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제 2 절 보세구역

### 1. 보세구역 의의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이곳에서 수출입통관을 하려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 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의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 판매, 수출입 물품 검사 등을 시행한다.

### 2. 보세구역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표 2-6>에 보듯이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과정에서 주로 통관편의, 일시장치와 검사목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

12) 입주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리 방법,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등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항만)시설관리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들이 지정된다. 이때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된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곳은 민간인이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장치, 제조, 전시, 건설과 판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했을 때 세관장이 허락으로 설치된다.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이 결합된 형태로, 수출과 물류를 촉진 하여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표 2-6〉 보세구역의 종류

구분	개 념	종 류	설치목적
지정	- 국가지자체·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을 지정 - 지정권자 : 세관장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행정상 공공의 목적
특허	- 민간인 토지, 건물 중 신청 - 특허권자 : 세관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건설장 - 보세전시장 - 보세판매장	-장치, 제조, 전시, 건설 및 판매목적 -민간인의 이익추구
종합	- 특정지역 중 지정 - 지정권자 : 관세청장	- 종합보세구역	- 수출 및 물류촉진 - 개인 및 공공이익 (투자촉진등 조화)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3. 보세화물 장치

보세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화물의 성질상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없거나 보세구역에 반입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sup>13)</sup>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1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 4. 반출입 신고절차

##### 1) 외국물품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나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신고수리, 보세운송신고와 반송신고<sup>14)</sup> 등의 사유로 물품반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2) 내국물품

보세창고에 일정기간 동안 내국물품을 반복적으로 장치하는 경우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반입신고는 내국물품 장치신고로 대신한다.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은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 반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표 2-7>은 보세구역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2-7> 보세구역 종류별 내국물품 신고절차

구분		신고절차
지정	지정장치장	- 수출물품 : 화물반출입대장 기록관리로 같음
특허	보세창고	- 수출물품: 화물반출입대장 기록관리로 같음 - 내국물품 : 내국물품장치신고로 같음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건설장	- 반출입신고 생략
	보세판매장	- 내국물품 반출입절차 규정
종합보세구역		- 반출입신고 생략

#### 5. 재고관리

매 분기별 자체 전산시스템의 재고자료를 출력하여 실제재고와 대조하여 이상이

14)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전산재고내역과 현품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재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세관장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재고현황과 대조·확인하고, 필요하면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6. 보수작업

보세화물은 그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수송 도중에 파손된 포장을 보수하거나, 통관을 위하여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개장, 구분, 분할, 합병 등의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수작업을 할 때 타 물품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국물품만을 재료로 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 있고,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7. 해체, 절단작업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작업은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 물품에 해체·절단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해체·절단 작업을 명할 수 있다.

## 8. 폐기신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이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9. 멸실신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품명, 규격·수량 및 장치장소, 멸실 연월일과 멸실 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견품반출

수입검사, 검역 또는 기타 상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견품으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견품을 반출할 수 있다. 견품반출허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견품채취로 인하여 장치 물품의 변질, 손상, 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품반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 매각 및 국고귀속

### 1) 보세화물 장치기간

보세구역 종류별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매하거나 국고귀속 등 절차를 진행한다. <표 2-8>은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종류별 장치기간을 정리하고 있다. 장치기간이 있는 경우 최저 2개월에서 최고 6개월인데 우리나라 물류중심지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인천항만과 부산항만 등은 모두 최저 2개월이다.

<표 2-8> 보세구역 종류별 장치기간

구 분		장치기간	연장	비고	
보세구역	지정장치장	2개월	2개월	- 부산·인천항 부두 - 인천·김해공항 內	
		6개월	-	- 기 타	
	특허보세 구 역	보세창고	2개월	2개월	- 부산·인천항 CY·CDCY - 인천·김해공항 內
			6개월	6개월	- 기타
		기타	특허기간	-	- 보세공장·판매장 등
종합보세구역		없음	-		
자유무역 지 역	관세청장 지정지역	3개월	-	- 부산항 터미널 등	
	기타	없음	-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2) 반출통고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할 수 있으며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한다.

### 3) 매각공고 및 매각

매각공고는 세관 게시판과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에 게재된다. 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으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매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4) 국고귀속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국고귀속 예정 통고를 한 후 물품의 소유권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12. 폐기명령 및 대집행

세관장은 지정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것을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 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 13. 입출항 화물관리

### 1) 입항적하목록<sup>15)</sup> 제출

적하목록의 제출책임자<sup>16)</sup>는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15) 선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16) 외국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고 한다)

경우 선박 운항선사가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제출한다.

## 2) 하선신고

하선은 Master B/L 단위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3) 하선결과보고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 하선신고자는 하선작업 완료 후 다음 날까지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4) 선적지 보세구역 수출물품 반입신고

수출하려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등 서류를 제출받아 화물반출입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으려는 물품의 반입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5) 출항적하목록 제출

출항적하목록은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다만 환적화물, 공컨테이너는 출항 이튿날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4. 보세운송

보세운송 신고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한다. 보세운송 신고 후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표 2-9>은 자유무역지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입신고수리물품반출의무<sup>17)</sup>가 없고, 장치기간이 없어 체화<sup>18)</sup>가

발생되지 않으며 보세사 채용의무가 없다.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 2-9〉 자유무역지역과 특허 보세구역의 주요 차이점

구분	특허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관세청장, 세관장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배후지 및 물류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항만배후지 : 해양수산부 장관
예정지역	절차 없음	3년(3년 연장)지정 가능
화물 장치기간	- 보세화물 : 6월(6월 연장) - 비축물품 : 비축기간 -물류신속화보세구역:2월(2월연장)	- 원칙 : 장치기간 없음 - 관세청장 지정지역 : 3월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 물류신속화 보세구역 수입신고수 리물품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원칙 : 수리후 반출의무 없음 - 관세청장 지정지역 수입신고수리물 품 : 15일 이내(위반시 과태료)
체화처리	- 관세법에 따른 절차	- 원칙 : 체화 미발생 - 예외 : 관세청장 지정지역 관세법준용 ※ 화주불분명 등 사유발생시 6월 경 과하면 매각요청
보세사 채용의무	- 운영인이 보세사이거나 보세사 1 인 이상 채용의무	- 채용의무 없음
보수작업 범위	- 보존, 포장개선, 라벨링, 단순절단, 선별, 분류, 용기변경, 단순조립 및 이와 유사한 작업(현상유지 수준)	- 보존,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 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단, 원 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행위 제외)
보수작업 절차	- 작업전 : 보수작업승인신청 - 작업후 : 보수작업 완료보고	- 보수작업승인 및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며, 입주기업체 자율로 작업
내국물품 반입신고	- 장치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의무 - 1년 이상 장치불허(원칙)	- 내국물품 반입신고의무 없으며, 필요시 반입신고 가능
내국물품	- 신고의무 없음	-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반입

17)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는 장치기간  
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18)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



반출신고		사실 입증서류를 직접제출하거나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출입자 (차량)	- 보세구역출입자(차량)은 통해중부 착의무는 없으나, 출입시 세관공무 원의 지시를 받아야 함	- 제한 없음

자료 :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제 3 장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태 분석

###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현황

#### 1.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수출입 교역량 및 교역액

자유무역지역법을 적용받아 국내외로 반출입되는 전국 수출입 물동량은 해상 화물은 80% 이상, 항공화물은 95% 이상이다. <표 3-1>에서 보듯이 무역량을 중량으로 표시했을 때 울산항이 가장 많고, 금액으로 표시했을 때 부산항과 인천공항 순으로 많다. 이것은 울산에 철강, 자동차와 석유 등 중화학산업이 형성되어 중량이 높은 원재료와 상품이 수출입되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공항과 부산항은 상대적으로 중량대비 고부가가치 상품과 원재료들의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3-1> 우리나라 항만별 수출입 교역량 및 교역액(2016년)

구분	수출		수입		수출입	
	톤	천\$	톤	천\$	톤	천\$
부산항	36,816,049	152,433,928	35,667,844	111,882,276	72,483,893	264,316,204
울산항	31,774,403	35,655,089	82,675,858	30,611,936	114,450,261	66,267,025
광양항	23,082,539	22,764,412	69,278,306	9,895,325	92,360,845	32,659,737
인천항	11,424,748	44,078,502	70,221,860	51,136,570	81,646,608	95,215,072
평택항	3,532,815	24,591,389	38,751,248	24,346,999	42,284,063	48,938,388
인천공항	573,841	133,410,941	563,775	114,145,964	1,137,616	247,556,905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국제물류통계(<http://www.spidc.go.kr>) 참조

## 2. 자유무역지역 역내 수출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마산·군산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류업체로 수출실적이 낮다.

<표 3-2>에서 보듯이 전국 비관세지역 수출실적은 일반 수출을 제외하고 금액 기준을 표시했을 때 보세공장이 가장 많고,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순이다. 이것은 조선, 정유,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상품이 원재료를 보세가공하여 수출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표 3-2> 전국 비관세지역 수출실적(2017년)

(단위 : 천불, 톤)

종류	건수	중량	금액
일반수출	7,648,130	152,985,890	354,613,057
보세공장에서부터 수출	626,532	8,715,004	176,788,483
관세자유지역으로부터 수출	38	7,648	8,560
자유무역지역으로 부터 수출	64,465	142,684	10,572,954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출	8,182	2,490,535	10,692,318
공해상 수산물의 현지수출	317	694,301	591,870
선상신고	5,181	34,837,418	20,243,817
우편수출	70,275	3,634	183,362
합 계	8,423,120	199,877,116	573,694,421

※ 관세청홈페이지 통계정보 수출입물류통계 자료(<http://www.unipass.customs.go.kr>)

## 3. 자유무역지역 역내 사용소비 수입현황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제조업체가 보세화물 상태로 사용 소비하는 원재료, 시설재 등 수입실적은 금액기준 전체 수입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에서 보듯이 전국 비관세지역 수입실적은 일반수입을 제외하고 금액기준을 표시했을 때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순으로 많다. 이것은 앞서 수출현황에 기술한 사항과 동일하게 국내 자유무역지역이 제조업 아닌 단순 보관·운송하는 물류업체 중심이기 때문이다.

〈표 3-3〉 전국 비관세지역 수입실적(2017년)

(단위 : 천불, 톤)

종류	건수	중량	금액
일반수입(외화획득용)	620,641	181,420,721	110,251,928
외국으로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349,505	1,424,743	42,867,873
외국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원재료)	33,011	133,425	8,861,026
해외진출기업 제작물품 수입(외화획득용)	57	93	1,167
보세건설장반입물품 수리전사용승인 물품	1,251	12,381	3,959,091
해외진출기업 제작물품 수입(내수용)	115	96	3,409
보세건설장반입물품 수리전사용승인물품	1,749	28,678	4,625,877
일반수입(내수용)	17,602,653	417,044,595	304,062,817
수리전반출승인수입(외화획득용)	244	4,411	64,014
수리전반출승인수입(내수용)	1,029	191,526	628,683
면세품 판매장 수입(반입)	3,687	1,405	155,242
우편물품(국제우체국 면허분)	45,093	559	120,043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22,324	811,802	1,971,236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9,443	8,463	835,432
외국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시설재)	284	721	70,459
합 계	18,691,086	601,083,626	478,478,296

※ 관세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수출입물류통계 자료(<http://www.unipass.customs.go.kr>)

#### 4.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현황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물동량은 전체 부산항 물동량의 63%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2~10%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에서 보듯이 신항으로 반출입되는 품목은 기타품목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와 관련 제품이 가장 많고, 플라스틱고무 및 제품, 기계류 및 관련 부품 순이다. 이것은 해상운송 화물의 특성상 일반 공산품 수출입 물동량이 많기 때문이다.

〈표 3-4〉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화물 물동량

(단위 : 톤)

구분	화물품목	2015년	2016년	2017년
1	방직용섬유 및 그 제품	32,643,167	35,692,476	40,053,637
2	플라스틱고무 및 제품	25,229,508	23,456,845	26,763,717
3	기계류 및 그 부품	21,474,414	21,834,235	22,030,016
4	화학공업 생산품	17,870,463	17,140,560	16,904,780
5	차량 및 그 부품	16,021,710	15,369,089	17,085,337
6	전기기기 및 그 부품	8,921,716	11,952,883	12,481,934
7	철강 및 그 제품	14,626,204	13,297,409	13,008,188
8	목재, 목탄, 코르크 등	13,861,611	12,198,015	12,284,635
9	조제식품, 음료, 주류등	8,742,277	8,814,832	9,978,087
10	기타	67,032,222	69,547,554	81,507,720
	합 계	226,423,292	229,303,898	252,098,051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항만정보시스템 자료 참조(<http://www.bpa-net.com>)

### 5.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컨테이너 물동량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7년 기준 13,720천 TEU로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66%를 차지하며 환적화물은 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에서 보듯이 컨테이너 물동량은 환적화물, 수출입화물 순으로 많다. 이것은 글로벌 정기라인 선사들이 신항을 환적항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항 신선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할 경우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80% 이상이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표 3-5〉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 : 천TEU)

구분		2016년	2017년	비고
북 항	수출입	4,254	4,465	
	환 적	2,494	2,718	
	합 계	6,748	7,183	
신 항	수출입	5,765	6,132	
	환 적	7,333	7,588	
	합 계	13,098	13,720	
부산항	수출입	10,019	10,597	
	환 적	9,827	10,306	
	합 계	19,846	2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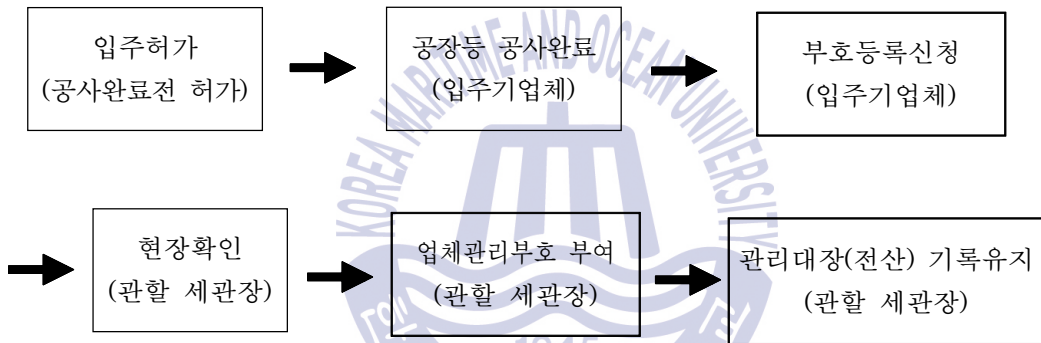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홈페이지 통계정보 수출입물류통계 자료(<http://www.unipass.customs.go.kr>)

## 제 2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무절차

### 1. 입주계약업체 등록관리

<그림 3-1>은 입주계약업체 업체부호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세관장은 관리권자<sup>19)</sup>로부터 입주계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업체 관리부호를 부여한다.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3-1> 입주계약업체 업체부호 부여절차



자료 : 부산본부세관, “해상물류”, 2011.

### 2. 입항적하목록 제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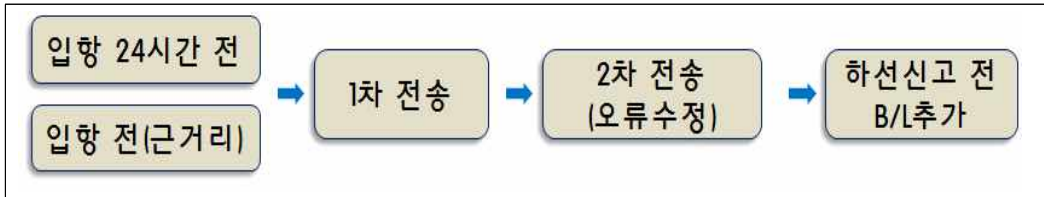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기 전에는 관세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항만으로 반입되는 화물은 일반 보세구역 항만으로 반입되는 화물과 동일하게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3-2>은 입항적하목록 제출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원거리지역은 입항 24

19)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시간 전,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은 입항전까지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1차 전송하고, 접수결과 오류가 통보되면 수정하여 2차 전송하여 마감한다. 마감 후 하선신고전에 추가 양륙할 화물이 있으면 B/L추가 신고를 한다.

〈그림 3-2〉 입항적하목록 제출 절차



〈그림 3-3〉은 자유무역지역 수입화물 통관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선박이 입항하면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신고 후 하역절차를 진행한다. 다른 지역으로 운송할 화물은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할 수 있다.

〈그림 3-3〉 자유무역지역 수입화물 통관단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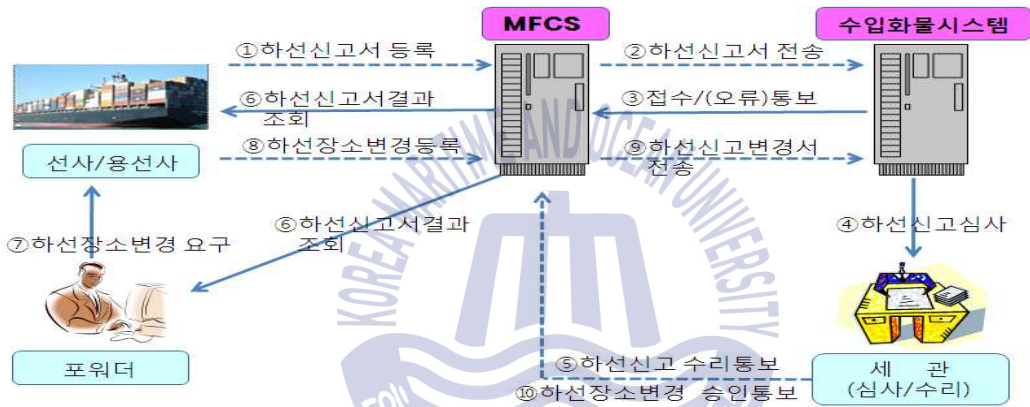
자료 : 부산본부세관, “해상물류”, 2011.

### 3. 하선반입<sup>20)</sup>

하선반입 단계는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되며 반입신고는 반입유형에 따라 수출입 화물관리시스템에 의한 반입신고, 입항적하목록 제출로 반입신고를 하고 있다.

<그림 3-4>는 하선신고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선사는 하선신고서를 전산으로 전송하고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전산으로 수리여부를 통보한다. 물품반입전 사전 변경으로 하선장소를 변경할 경우 전산으로 재신고하면 된다.

<그림 3-4> 하선신고 절차



자료 : 부산본부세관, “해상물류”, 2011.

### 4. 환적화물<sup>21)</sup> 반출입신고 절차

2014년 환적화물 처리절차 특례 고시로 반출입신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나 반출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입항단계 반입신고와 출항단계 국외반출신고는 적하목록 제출로 같음한다.

20)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21) 외국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 1) 자부두 환적인 경우(입항부두=출항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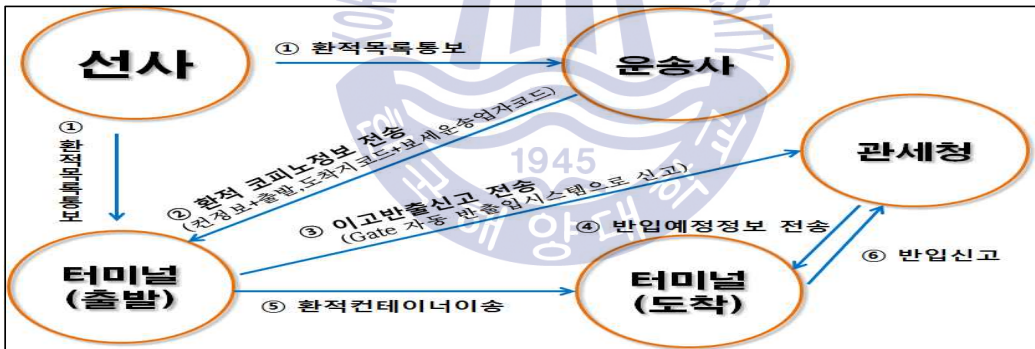
선사(항공사)로부터 적재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전까지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 유형은 통과화물 선적반출로 기재하여 신고한다.

## 2) 타부두 환적(입항부두 ≠ 출항부두)

입항지 터미널 운영인은 타부두 환적을 위해 운송인으로부터 반출요청을 받은 경우 <그림 3-5>에서 보듯이 특례 보세구역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절차와 같이 한다. 즉 반출전 컨테이너 번호, 목적지 및 운송업체를 기재하여 반출신고하고,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은 도착시 반입신고 한다.

단일 B/L의 복수 컨테이너가 분할하여 선적 반출되거나 부두를 달리하여 반출하는 경우 B/L을 사전 분할하여 반출신고하여야 한다.

<그림 3-5> 특례 보세구역<sup>22)</sup>(자유무역지역 포함)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절차



## 5. 보수작업

관세법상 보세구역내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자유무역지역은 세관장의 승인없이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22) 관할 내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포함한다)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 보세구역간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출신고서에 보세 운송업자와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한다.

보수작업 범위에 있거나 단순하게 B/L 합병과 분할의 경우에도 사용·소비신고 절차를 통해 화물관리시스템상 재고관리를 종결하여 국제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신고 물품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부적정 표시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관세법 적용이 배제되어 보수작업승인 신청 없이 작업은 가능하나, 현장 실무에서는 보세구역과 동일하게 전산으로 보수작업 신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 6. 내국물품 반출확인

자유무역지역은 내국물품이 자유롭게 반입은 될 수 있으나 반출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 후 반출토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 3-6>은 보세창고와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절차를 비교 정리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내국물품 반출의무가 없는 반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표 3-6> 보세창고와 자유무역지역의 내국물품 반출절차 비교

구 분	특허보세창고	자유무역지역
반출의무	장치기간(1년) 경과한 물품은 10일 내에 운영인 책임하에 반출	없 음
반출확인 의무	반출신고의무 없으며,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	반출확인대상 내국물품의 경우 반출 전에 세관장에게 반입 입증서류를 제출
반출확인 의무처벌 사항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10일내 반출하지 않은 운영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입증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현장은 자유무역지역 출입구에 세관초소가 운영되지 않아 입주기업이 24시간 전산으로 자유롭게 내국물품 반출목록을 신고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반출물품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3-6>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 시 반출 확인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확인 전산신고 절차



자료: 관세청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전자신고 참조

## 7.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신고

자유무역지역법은 국내에서 수출신고수리된 외국물품의 반입신고는 수출신고필증 제출로 같음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이 매 건별 수출신고필증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8. 체화 및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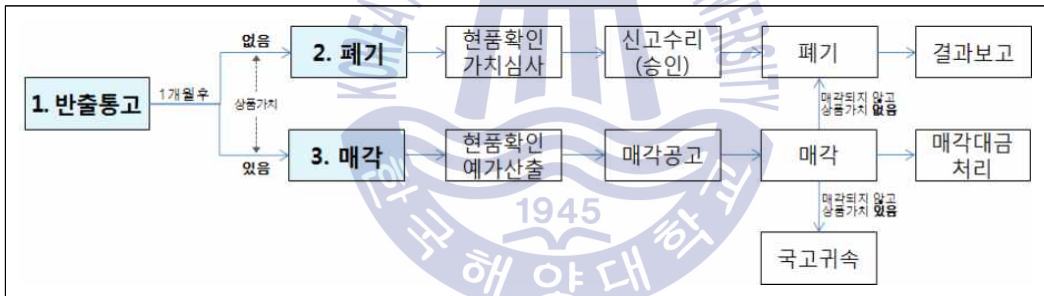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은 원칙적으로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절차가 없으므로 물품가치 저하를 이유로 폐기할 수는 없지만, 반입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 또는 부패·변질된 물품 등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책임으로 폐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시범적으로 '16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개시 직전부터 하선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체화 및 폐기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폐기신고인은 송(수)하인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또는 처분권 위임 취지로 받은 서신, 전자 우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3-7>은 자유무역지역 체화 및 폐기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폐기,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 화주에게 반출통고를 하고 현품확인과 물품 가격을 산정하여 폐기 또는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경우 국고에 귀속시킨다.

<그림 3-7> 자유무역지역 체화 및 폐기 절차



자료: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9. 동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간 물품이동

세관 화물관리시스템에 수입신고수리번호, 보세운송신고번호 등 반출입근거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며 운송기간은 3일이다.

## 10. 환적화물 및 수출신고수리물품 국외반출신고<sup>23)</sup>

23)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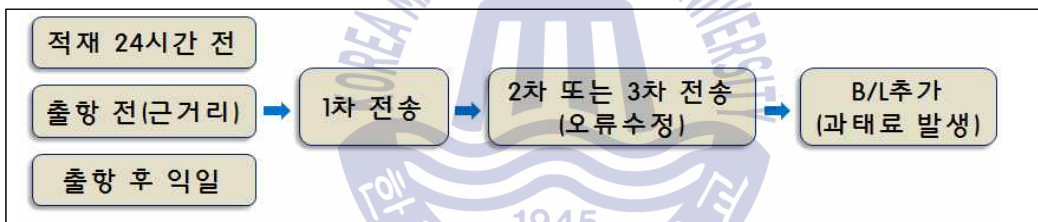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국외반출신고를 같음하며 환적화물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은 출항 후 다음 날까지다.

### 11. 출항적하목록 제출

적재신고<sup>24)</sup>는 물품이 선적지 항만 내 장치된 후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따라 출항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그림 3-8>은 출항적하목록 제출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원거리지역은 선박에 물품을 적재 24시간 전,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은 출항전까지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1차 전송하고, 접수결과 오류가 통보되면 수정하여 2차 전송하여 마감한다. 마감 후 B/L을 추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환적화물의 경우 출항 다음날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된다.

<그림 3-8> 출항적하목록제출 절차



24) 수출(반송)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안

앞 장에서 정리한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실무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의 문제점

이 절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관리권자와 화물관리권자 이원화에 따른 문제

최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선용품 공급업으로 입주한 업체가 외국물품 담배를 해외 역직구 판매를 가장하여 국내로 장기간 담배를 밀수입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관리권자는 입주계약 권한만 있고 사업행위에 대해 강제 조사권한이 없다. 반면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 물품검사, 재고조사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행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계약권과 조사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만약 관리권자가 선용품 공급업의 다른 사업행위를 한 것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해당 입주기업을 계약위반 행위로 입주계약을 해지하여 불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2. 환적화물 입항 반입신고 시기와 실제 물품 반입시점 불일치

환적화물의 입항 반입신고는 입항 전까지 제출하는 입항적하목록으로 대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환적화물이 실제 하선되지 않거나 하선작업 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하선으로 부두에 반입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추가로 하선되는 경우 물품을 반입 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경우에 해당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보세구역은 물품이동 시 실시간 전자문서로 반출입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3. 국내에서 수출신고수리물품된 외국물품 반입신고 절차 이행의 문제점

수출신고수리된 외국물품의 반입신고는 수출신고필증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주기업은 물품반입할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인지, 반입 후 수출 신고수리를 받을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반입신고 이행을 할 수 없다.

특히, 컨테이너전용터미널 경우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만 관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입신고 이행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보세구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화물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신고를 대신하고 있다.

### 4. 내국물품 반출확인의 문제점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면 내국물품반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으로 내국물품반출목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보세구역이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를 자체 화물반출입대장 기록 관리로 대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보수작업관리 위반 시 과중한 처벌규정

자유무역지역은 보수작업을 하고 그 보수작업 내용을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보세구역 보수작업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에 비해 과중하다 할 수 있다.

### 6. 환적화물 국외반출신고 시기와 물품의 실제 반출 시점 불일치

환적화물의 국외반출신고로 대신하는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출항 후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어 실제 물품이 선적 반출된 시점과 불일치한다. 출항 후 환적화물 적하목록 제출이 누락되어 추가 신고할 경우 국외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이 반출된 경우에 해당되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보세구역은 물품반출 시 실시간 전자문서로 선적반출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제 2 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안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무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 관리권자와 화물관리권자 이원화, 환적화물 입항반입 신고시기와 실제 물품의 반입시점 불일치, 국내에서 수출신고수리물품된 외국물품 반입신고 절차 이행, 내국물품 반출확인, 보수작업관리 위반 시 과중한 처벌규정, 환적화물 국외반출 시기와 물품의 실제 반출 시점 불일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세관장에게 입주계약 체결사업 이행 조사 권한 부여 및 결과 통보 의무 신설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체결사항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권한을 가지고 세관장은 재고관리 상황 등을 조사하여 입주기업이 계약체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기업의 불법적인 사업행위를 방지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은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관련된 법조항을 참조하여 법률 개정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 세관장 입주계약 체결사업 이행 조사 권한 부여 개정안

현 행	개선안
〈신설〉	<p>〈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조사결과 통보)〉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8항〉</p> <p>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법39조에 따른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시 법 제11조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2. 환적화물 입항 하선반입 신고절차 개선

적하목록 제출 방식에서 보세구역과 동일하게 실시간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반입신고로 고시를 개정하여 실물이동과 반입신고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표 4-2〉는 현행 환적화물 입항 반입신고 할 때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앞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했을 때 변화된 법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2〉 환적화물 입항 반입신고 개정안

현 행	개선안
<p>〈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5항〉</p> <p>1.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이적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u>입항적하목록</u></p>	<p>1.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이적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u>수출입화물시스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u> 하여야 한다.</p>

## 3.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신고 절차 개선

수출신고수리필증 서류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은 현실적으로 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할 수 없다. 반면 보세구역 기업들은 대장기록관리로 반입

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이것은 양 지역의 서류제출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한 입주기업의 서류제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3>은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행 법률과 자율기록관리와 전산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개선안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4-3>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신고 개정안**

현행	개선안
<p>&lt;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5항&gt;</p> <p>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p>	<p>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p>

#### 4. 내국물품 반출확인 생략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이 재고기록을 유지해야 할 물품은 외국물품, 반입신고한 내국물품<sup>25)</sup>,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sup>26)</sup>을 받은 물품에 한정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과세보류, 환급 등 세금혜택을 받은 물품에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세금혜택을 받은 물품은 전산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고, 재고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25) 관세환급, 부가가치세영세율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말한다.

26) 내국원재료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수입통관 시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준다.

세관초소 운영이 폐쇄된 환경에서 입주기업이 내국물품 반출확인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관세행정 비용에 비해 관리의 실익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반출확인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표 4-4> 내국물품 반출확인에 대한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확인 폐지 개정안

현 행	개선안
<p>&lt;자유무역지역법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gt;</p> <p>① 외국물품 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 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lt;폐 지&gt;</p>

## 5. 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관리 위반 처벌규정 완화

보세구역에 비해 과하게 처벌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내 보수작업 위반 처벌 규정을 <표 4-5>에서 보듯이 관세법 처벌규정으로 일치시켜 법의 형평성을 맞추고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4-5> 자유무역지역법 보수작업 기록관리 위반 처벌 규정 개정안

현 행	개선안
<p>&lt;자유무역지역법 제60조(벌칙)&gt;</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4.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기록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자</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00만원 이하의 과태료</u>에 처한다.</p> <p>4.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기록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자</p>

## 6. 환적화물 국외반출신고 절차 개선

출항 후 다음 날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에서 현재 실시간 전자문서 방식으로 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표 4-6>에서 보듯이 출항적하목록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적화물을 국외반출할 때 실물이동과 반입신고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표 4-6> 환적화물 국외반출신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lt;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gt;</p> <p>②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란 출항적하목록을 말한다.</p>	<p>②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이적하는 환적화물인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시스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 하여야 한다.</p>

## 제 5 장 결론

해외 항만과 날로 치열해 지는 물동량 유치경쟁에서 우리나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환적화물 유치와 물류경쟁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자유무역지역내 화물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보세구역과 화물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무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외국물품 반출입 절차, 내국물품 반출입 절차, 입출항 화물관리 절차, 보세운송, 물품의 폐기·장치기간·매각절차 등 물품의 관리, 보수작업 절차, 재고관리 및 재고조사,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등 화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통계자료를 통해 전국 자유무역지역 수출입 교역량, 수출입 현황,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화물 및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하였다.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실무절차를 입주기업 관리, 적하목록 제출시기, 환적화물 반출입 신고, 타부두 환적 절차, 내국물품 반출확인,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신고, 장기보관 환적화물 폐기 및 매각절차, 환적화물 국외반출신고 절차 등 세관의 운영사례를 보세구역과 비교하면서 조사·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과 다른 사업행위를 할 때 조사권한을 세관장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신설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입주기업의 역내 불법 사업행위를 사전 예방 또는 조기에 적발하여 자유무역지역지정 취지에 맞게 사업행위를 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환적화물 반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입항적하목록 제출로 대신하고 있는 반입신고를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 반입신고로 개정하여 화물의 실물이동과 반입신고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수출신고수리된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절차를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입주기업이 자율적 관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세제혜택을 받는 물품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재고조사로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무단반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이에 따라 실제 내국물품 반출확인의 관세행정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내국물품 반출확인 제도 폐지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 기록관리 위반 행위 처벌 규정이 보세구역 비해 가중하여 보세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낮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적화물 국외반출신고 절차와 관련 출항 후 다음 날까지 적하목록 제출 방식에서 실시간 전자문서 반출신고로 개정하여 화물의 실물이동과 반출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범위를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터미널 및 배후단지 입주기업만 한정하여 조사한 한계가 있다. 즉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등 다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에 대한 화물관리 실태를 포함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다른 항만 자유무역지역과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화물흐름과 물품관리제도의 문제점, 입주기업의 애로 및 개선 요청사항 등을 세관 화물관리 실무측면에서 전국 자유무역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 국내문헌 >

- 이성오, 「마산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장 개,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함길선,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윤상렬, 「자유무역지역내 효율적 화물관리 및 신물류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이원빈외 3인,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및 관세행정 최적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6.
- 강성훈외 2인,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2015.
-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부산경남본부세관, “해상물류”, 2011.
- 관세청, “2017년도 관세법령집”, 2017.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관계법규집”, 2017.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전형 기초심화교재”, 2018.

< 인터넷 자료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http://www.spidc.go.kr>

부산항항만물류정보시스템 <http://www.bpa-net.com>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